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49
----------	-----

2020. 6. 24.(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오영탁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0년 5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6월 9일

-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오영탁 의원)

가. 제안이유

-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충청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충청북도산불방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 3. 검토보고 요지

###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서완석)

####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산림보호법」 제29조는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 대책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30조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 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충청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충청북도산불방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0. 5. 22.~'20. 5. 2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봄철 산불대책본부 종료 후 가을철 산불방지 사전차단을 위한 산불근절 세부추진계획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 요청하였으나, 봄철 산불대책본부 종료 후 가을철 산불방지 차단을 위한 산불근절 세부추진계획은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조례안 제4조제2항제5호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사항임.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청권 4개 시·도 중 산림 면적이 가장 적은 세종시를 제외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단양 산불 발생과 같이 크고 작은 산불 발생으로 수많은 산림이 소실되고 있으므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산불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산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기관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 대책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제5조의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제6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산림보호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충청북도산불방지협의회(이하“산불방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
2.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

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의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2. 도의 산불유관기관의 기관장 또는 업무담당부서장

③ 산불방지협의회 위원장은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로 하고, 부 위원장은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산불방지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산불방지협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산불방지 활동) ① 도지사는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도민의 산불방지의식을 기르기 위해 매년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양한 산불방지 활동을 개발·보급한다.

1. 계획과 목적
2. 구체적인 행동계획
3. 유사활동과 연계 등

③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도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시민참여와 상호협력에 따라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대한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불방지 지원)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③ 도지사는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기록 및 보고)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 및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
2. 산불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산림보호법]

####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두며, 부분부장은 산림청의 차장이 되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분부장을 두며, 부분부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②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21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 ⑤ <생략>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도내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비,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을 지원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할수 있도록 산불방지 대책 및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산림청 국·도비보조사업 으로, 산불감시원 및 진화용 헬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지원중이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없음

### 3. 관련조문

- 산불방지 지원(안 제8조)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도내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임

#### 나. 추계 결과

- 2020년도 기준 사업비 : 25,186,277천원(도비 5,000,314천원)

